

#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외국인투자자의 물품매매 2026년 10월 18일 전 알아야 할 12가지 주요 변경사항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

제09/2018/NĐ-CP호 시행령 대체

상법 및 대외무역관리법 중 물품매매 및 물품매매와 직접 관련된 활동에 관한 세부 규정

목차

## 본 문서의 내용

|           |                                        |    |           |                                 |    |
|-----------|----------------------------------------|----|-----------|---------------------------------|----|
| <b>01</b> | 발급 권한이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전                    | 03 | <b>08</b> | 영업허가증 기재사항에 소유자 국적 및 매매 물품 추가   | 10 |
| <b>02</b> | 공상부 협의 폐지,公安부 및 국방부 협의로 대체             | 04 | <b>09</b> | 대리활동이 유통권 범위로 재분류               | 11 |
| <b>03</b> | 公安부 및 국방부 협의가 필요한 경우                   | 05 | <b>10</b> | 경제적 수요심사 기준이 5개 그룹에서 4개 그룹으로 축소 | 12 |
| <b>04</b> | 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 필요 | 06 | <b>11</b> | 연 1회에서 연 2회 보고로 변경              | 13 |
| <b>05</b> | 재무계획 조건 폐지                             | 07 | <b>12</b> | 허가증 취소 사유 추가                    | 14 |
| <b>06</b> | 시장접근 조건을 영업 전 기간 동안 지속 충족해야 함          | 08 |           | 경과규정 및 시행 일정                    | 15 |
| <b>07</b> | 영업허가증 유효기간이 기업등록증 기준으로 변경              | 09 |           |                                 |    |

## 1. 발급 권한이 성 산업무역국에서 성급 인민위원회로 이전

이전

### 성 산업무역국

1. 외국인투자경제조직의 본사 소재지 관할 성 산업무역국이 영업허가증의 발급, 재발급, 변경 및 취소를 담당한다.
2. 외국인투자경제조직의 소매점 소재지 관할 성 산업무역국이 소매점 설립허가증의 발급, 재발급, 변경, 연장 및 취소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



2026년 10월 18일부터

### 성급 인민위원회

1. ~~성 산업무역국~~성급 인민위원회가 외국인투자경제조직의 본사 소재지에서 영업허가증의 발급, 재발급, 변경 및 취소를 담당한다.
2. ~~성 산업무역국~~성급 인민위원회가 외국인투자경제조직의 소매점 소재지에서 소매점 설립허가증의 발급, 재발급, 변경, 연장 및 취소를 담당한다.

**참고:** 성급 인민위원회는 통상 이 권한을 전문 부서에 위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산업무역국이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 업무를 계속 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허가증은 성급 인민위원회 명의로 발급된다.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

## 2. 공상부 협의 폐지, 공안부 및 국방부 협의로 대체

이전

### 공상부, 소관 부처

3. 발급기관은 다음의 경우 공상부 및 소관 부처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공상부와 소관 부처는 업종 계획, 산업발전전략, 협상 진행상황 및 베트남의 시장개방 수요를 근거로 심사한다.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8.3조 및 제10조



2026년 10월 18일부터

### 공안부 및 국방부

3. 발급기관은 다음의 경우 ~~공상부 및 소관 부처~~ **국가안보 사항에 관한 공안부 및 국방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참고:** 양 부처는 14근무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어느 한 부처라도 반대하는 경우 발급기관은 해당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제12.4조 및 제12.5조).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8.3조

### 3. 공안부 및 국방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전

#### 공상부 및 소관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3가지 경우

1. 쌀, 설탕, 녹화된 시청각물, 서적, 신문 또는 잡지의 소매용 영업허가증 발급 또는 변경: 공상부 및 소관 부처 협의.
2. 운할유, 물류서비스, 물품임대, 무역진흥, 상업중개서비스, 전자상거래 또는 물품·용역 입찰의 수입 및 도매용 영업허가증 발급 또는 변경: 공상부 협의.
3. 소매점 설립허가증의 발급 또는 변경: 공상부 협의.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8.3조



2026년 10월 18일부터

#### 공안부 및 국방부의 협의가 필요한 3가지 경우

1.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 출신 투자자인 경우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가 아직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포함).
  2. 외국인투자자가 지배하는 기업이 전자상거래 중개플랫폼, 전자상거래 소셜네트워크, 또는 대형 디지털플랫폼으로 분류되는 종합거래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3. 대규모 소매체인: 500㎡ 미만 매장 100개 이상, 500㎡~3,000㎡ 미만 매장 50개 이상, 또는 3,000㎡ 이상 매장 30개 이상.
- 일반 소매점 설립허가증의 경우 더 이상 어떠한 부처 협의도 필요하지 않다.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8.3조(제9.2조, 제9.3조 b항 및 제9.4조 b항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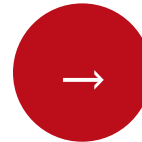
## 4. 신청서류: 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이전

### 모든 경우에 서류 전체 제출 필요

- 영업허가증 신청서
- 발급조건,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에 관한 설명서
- 세무당국 발급 체납세금 없음 증명서류
- 기업등록증 및 투자등록증 사본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12조



2026년 10월 18일부터

### 자료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7. 외국인투자경제조직은 발급기관이 국가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서류·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 조 제3, 4, 5, 6항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3, 4, 5, 6항은 세무서류, 기업등록증 사본, 투자등록증 및 소매점 설립허가증을 말한다.  
영업허가증의 변경 및 재발급, 그리고 소매점 설립허가증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11.7조(제14.4조, 제17.3조, 제25.6조 및 제34.3조도 동일)

## 5. 영업허가증 신청 시 재무계획 조건 폐지

이전

### 재무능력 증빙 필요

b) 신청하려는 영업허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무계획을 갖출 것.  
신청서류에는 재무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모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재무지원 확약서; 재무능력 보증서; 또는 투자자의 재무능력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9.1조 및 제3.16조



2026년 10월 18일부터

### 재무 조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

a) 베트남과 해당 국가·지역이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상의 시장접근 조건;  
~~b) 신청하려는 영업허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재무계획을 갖출 것;~~  
b) 베트남에 경제조직을 설립한 지 1년 이상인 경우, **신청서 제출일 기준** 체납세금이 없을 것.  
**참고:** 신청서류에는 제11.2조 b항에 따른 5개년 사업계획 설명서를 여전히 첨부해야 하며, 재무계획 부분 및 관련 재무서류만 제외된다.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9.1조

## 6. 시장접근 조건을 영업 전 기간 동안 지속 충족해야 함

이전

### 발급 시점에만 심사

a)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상의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할 것.  
본 시행령은 영업허가증 발급 후에도 이 조건을 계속 충족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9.1조 a항



2026년 10월 18일부터

### 영업 전 기간 동안 지속 충족해야 함

a) 베트남과 해당 국가·지역이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상의 시장접근 조건으로서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법령에 따라 선택 적용한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본 시행령에 따라 베트남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전체 기간 동안 이 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한다;**

**참고:** 이 조건을 지속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40.1조 c항에 따라 영업을 강제 정지되며, 12개월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제41.1조 d항에 따라 영업을 종료된다.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9.1조 a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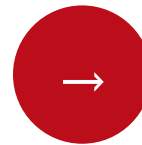
## 7. 영업허가증 유효기간이 기업등록증 기준으로 변경(기존 고정 5년에서 변경)

이전

### 5년 또는 기간 미정

- a) 본 시행령 제9조 제2, 3, 4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기간은 5년으로 한다;
  - b) 재발급된 허가증의 기간은 기존 영업허가증의 잔여기간과 동일하다.
- 시장개방을 이미 약속한 국가 출신 투자자군(제9조 제1항)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11.2조



2026년 10월 18일부터

### 기업등록증 기준으로 변경

- a) **본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기간은 기업법령에 따라 기업등록증의 기간(있는 경우)과 동일하다;**
  - b) 본 시행령 제9조 제2, 3, 4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기간은 5년으로 한다;
  - c) 재발급된 허가증의 기간은 기존 영업기간의 잔여기간과 동일하다.
- 참고:** 아직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은 국가 출신 투자자군, 또는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업종·물품을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10.2조

## 8. 영업허가증 기재사항에 소유자 국적 및 매매 물품 추가

이전

### 5개 항목

- a) 명칭, 기업코드, 본사 주소 및 법정대표자
- b) 소유자, 출자사원, 창립주주
- c) 유통 물품
- d) 물품매매와 직접 관련된 활동
- d) 기타 사항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11.1조



2026년 10월 18일부터

### 6개 항목

- a) 명칭, 기업코드, 본사 주소 및 법정대표자
- b) 소유자, 출자사원, 창립주주 **및 그 설립등록지·국적**
- c) **물품매매 활동**
- d) 물품 **유통매매**
- d) 물품매매와 직접 관련된 활동
- e) 기타 사항 **(있는 경우, 발급기관이 영업허가증에 기재)**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10.1조

## 9. 물품매매대리 활동이 상업중개서비스가 아닌 유통권 범위로 재분류

이전

### 상업중개서비스로 분류

- h) 상업중개서비스 제공(대리활동 배제하지 않음).
- 4. 유통이란 도매, 소매, 물품판매대리 및 상업 프랜차이즈 등의 활동을 말한다.
- 6. 도매란 도매상, 소매상 및 기타 상인·조직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며, 소매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3.1조 h항,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2026년 10월 18일부터

### 유통권 범위로 전면 편입

- đ) 상업중개서비스 제공, **도매판매대리 및 소매판매대리 활동은 제외;**
- 6. 유통이란 도매, 소매, 물품판매대리 및 상업 프랜차이즈 등 **유통분야 내 활동을 말한다.**
- 8. 도매[...] **도매판매대리를 포함**하나 소매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9. 소매[...] **소매 판매대리를 포함**한다.
- 참고:** 도매·소매 판매대리를 영위하는 기업은 이제 상업중개서비스가 아닌 유통권 항목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3.3조 đ항,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 10. 경제적 수요심사 기준이 5개 그룹에서 4개 그룹으로 축소

이전

### 5개 그룹 기준에 근거

- a) 소매점 영업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시장구역의 규모
- b) 해당 지리적 시장구역 내 기존 영업 중인 소매점 수
- c) 해당 구역 내 시장안정 및 소매점·전통시장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d) 교통밀도, 환경위생, 소방안전에 미치는 영향
- ㄸ) 사회경제발전 기여 가능성: 국내 근로자 고용창출; 소매업 발전 및 현대화 촉진; 주민 생활환경·여건 개선; 국가예산 기여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23.2조



2026년 10월 18일부터

### 이제 4개 그룹 기준만 적용

- a)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시장구역의 규모~~ **매장면적 5,000㎡ 미만: 읍·면·동 단위로 심사. 5,000㎡ 이상: 성·중양직할시 단위로 심사**
- b) ~~해당 지리적 시장구역 내 기존 영업 중인 소매점 수~~
- b) 시장안정 및 소매점·전통시장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해당 구역의 수요 및 신설 예정 소매점의 수요충족 능력**
- d) ~~교통밀도, 환경위생, 소방안전에 미치는 영향~~
- c) 기여 가능성: ~~국내 근로자 고용창출~~; 소매업 발전 및 현대화 촉진; 주민 생활여건 개선; ~~국가예산 기여~~
- d) **해당 구역의 치안·질서·사회안전; 국경·도서·군사구역의 안전**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22.2조

## 11. 연 1회에서 연 2회 보고로 변경

이전

### 연 1회, 1월 31일 이전

외국인투자경제조직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물품매매 및 물품매매와 직접 관련된 활동에 관한 영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본 시행령은 자료 기준일을 규정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40.1조 a항



2026년 10월 18일부터

### 연 2회, 1월 15일 및 7월 15일 이전

매년 ~~1월 31일~~ 1월 15일 및 7월 15일 이전에 **연간 보고기간 및 상반기 6개월 보고기간의 이행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자료 기준일: **연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6개월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전자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 24개월 연속 정기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허가증 및 소매점 설립허가증 취소 사유가 된다.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38.1조 a항, c항 및 제38.3조

## 12. 허가증 취소 사유 추가: 12개월 내 3회 처벌

이전

### 6가지 취소 사유

- a) 기업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b) 투자등록증이 취소된 경우; c)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d) 12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d) 24개월 연속 정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e) 기한 후 3개월 내 요구된 보고서·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적 근거: 제09/2018/NĐ-CP호 시행령 제43.1조 및 제43.2조



2026년 10월 18일부터

### 새로운 사유 추가

- e) 기한 후 3개월 내 요구된 보고서, 서류,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령상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g)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물품매매 및 이와 직접 관련된 활동 위반으로 12개월 내 최대 3회 연속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소매점 설립허가증의 경우: **허가증 기재내용 위반으로 12개월 내 최대 3회 처벌을 받은 경우**(제42조 제2항 h호).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42.1조 및 제42.2조

**2026년 10월 18일부터 적용**

## 경과규정 및 시행 일정

### 2026년 10월 18일 이전 발급된 허가증

이미 영업허가증 또는 소매점 설립허가증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경제조직은 재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에 허가받은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44.1조**

###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제342/2026호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영업허가증) 또는 제29조 및 제30조(소매점 설립허가증)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발급기관은 기존 발급내용을 기록하고 새로 승인된 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44.2조**

###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주소 변경

성급 행정구역 조정으로 본사 또는 소매점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기업은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 허가증에 따라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44.3조**

### 2026년 10월 18일 이전 제출된 신청서류

제09/2018호 시행령 및 제146/2025호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서류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완설명을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제342/2026호 시행령이 적용된다.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44.5조**

**법적 근거:** 제342/2026/NĐ-CP호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 본 시행령은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제09/2018/NĐ-CP호 시행령을 대체하고 제146/2025/NĐ-CP호 시행령 제36조를 폐지한다.

DEDICA의 변호사와 법률전문가가 언제든지 지원해 드립니다. 심층 법률자문과 서비스는 지금 문의해 주십시오.

기업 및 투자  
형사

상시 법률자문  
인수합병(M&A)

분쟁 해결  
상표 및 저작권



## 주소

호치민시 쑤언호아동 하이바쯔 171,  
A&T빌딩 11층



## 전화

+84 39 969 0012



## 이메일

david@dedica-law.com



## 웹사이트

www.dedica-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받으세요.